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군 복무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현행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으로부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업무에
이용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 *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2. 「국가유공자법」 제74조의8에 따른 병무청으로부터 등록요건 인정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및 복무 등에
관한 병적기록표 *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